

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

1.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추진배경

■ '80년대 이후 축산업이 전업화, 기업화, 집단화되면서 대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에 관심이 높아짐

• 소 : ('90) 2,126천두, 655천호, 3.2두/호

→ ('00) 2,124천두, 303천호, 7.0두/호

• 돼지 : ('90) 4,528천두, 133천호, 34두/호

→ ('00) 8,214천두, 24천호, 436두/호

■ 정부는 축산분뇨를 퇴비·액비화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함

• '96년까지는 간이정화시설을 주로 지원하였으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'97년 이후 자원화시설로 지원이 거의 통일되었음

■ 퇴비화시설의 경우 시설비와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분조절제의 공급이 부족하여 농가에서 축산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음

■ 이와 관련 '01년부터 축산분뇨 처리비용 절감 및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으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었으며 '0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음



이재용
농림부 축산경영과장

2.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추진상 문제점

■ 축산농가에서 액비화처리를 할 경우 살포할 자경농지가 필요한데 양돈농가의 경우 자경농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, 액비화를

가축분뇨 액비화사업 어디까지 왔나?

향후 액비저장조 설치 및 액비화사업 추진계획

- 경종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확대지원('03 : 680개소)하여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을 추진하고,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시켜 액비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'03년도에 「축분비료유통센터」 40개소를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수거, 운반, 살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임
- 「축분비료유통센터」는 시·군농업기술센터, 지역 농·축협, 양돈협회 시·군지부 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액비에 대한 품질관리, 토양분석, 시비량 결정, 토양관리 프로그램 지도 등을 담당
-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환경개선제를 평가·홍보할 계획이며, 축산농가에서 평가결과 우수한 환경개선제를 활용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질 좋은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
위해서는 살포할 농경지를 보유한 경종농가와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

• 축산농가는 분뇨처리에만 집착하고 경종농가는 액비의 사용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거나 품질 좋은 액비를 희망

■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액비 운반차량·살포장비 등을 새로 구입하여야 하고 액상이라 단위당 균질살포가 어렵고 살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됨

• 환경개선제(악취제거제)를 투여하지 않고 단순 저장한 후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에 대처하기 어려움

• 액비의 부숙상태를 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, 과태료 등 추징염려

상준

■ 액비 사용기술·기준 등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무분별한 사용 우려

• 시·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의 비료성분, 액비의 비료성분 등을 분석한 후 「시비처방서」를 발급 받아 살포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부농가에서 관능적으로 살포

• 액비저장조의 건설한 시공으로 균열방지 및 정기적인 순찰로 액비유실 점검필요, 분뇨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물이 슬러지화되었을 때의 처리에 대한 문제 등 상준

3.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추진 현황

■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'00년도에 관계기관협의회, 액비화사업 추진

지역 시찰, 등 수차례의 협의·회의를 거쳐 '01년도에 액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

• 친환경농업지구구성사업지구,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지구, 지역특화사업, 쌀생산대책실적가산금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서 액비저장조를 시범 설치하도록 하였음

※ '01년 설치실적 : 339개소, 40.6억원 지원

■ '02년도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액비살포에 필요한 경지가 확보되어 있고, 액비를 공급할 수 있는 축산농가와 사전에 계약된 경종농가에 대해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

※ '02년도 지원계획 : 400
개소, 60억원

4.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등 액비화 추진 과 관련된 사항

가. 액비저장조 설치관련

■ 액비저장탱크는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함

•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1천㎡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과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·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·종자·농약·농기구·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은 세대당 1,500㎡(농지전용 신고일 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임)까지 농지전용 신고하고 설치가 가능함

■ 경종농가가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(1일 1톤 이상 처리하는 경우) 오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시장·군수·구청장(환

경담당부서)에게 재이용 신고를 하여야 함,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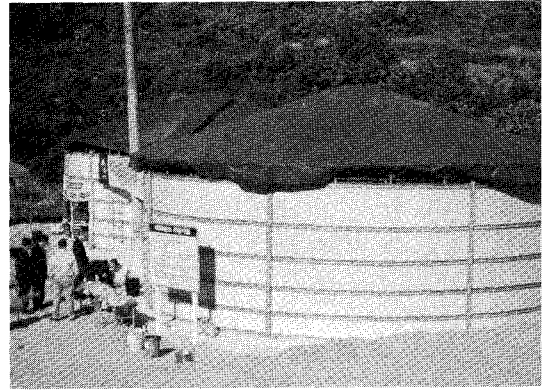
• 재이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, 축산폐수 확보 계획서, 축산폐수의 수집·운반·보관 및 처리계획서, 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(오분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)

나. 액비살포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시 오분법 규정상 처벌받을 수 있는 벌칙 등의 종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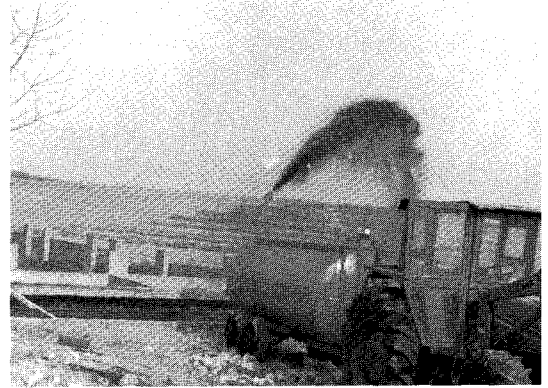
※ 오분법 규정에서 악취를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. 그러나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■ 신고·허가규모
농가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축사규모를 늘린 경우 등
⇒ 100만원 이하 과태료(오분법 제58조)
■ 허가규모 농가가 변경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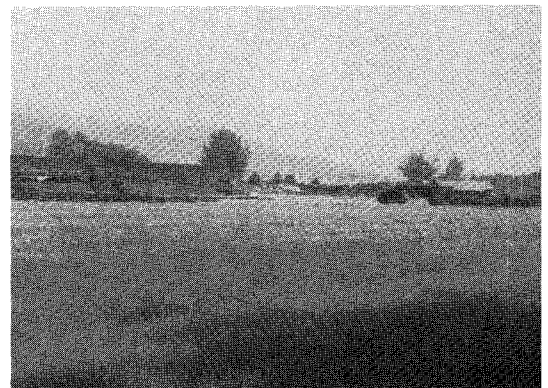
가를 받지 않고 축사규모를 늘린 경우 등
⇒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(오분법 제53조)



▲ <자료사진> 액비 저장탱크(경북 구미)



▲ <자료사진> 액비 살포 전경



▲ <자료사진> 액비를 이용한 논

■축사중 운동장을 설치하고 폐수유출방지턱 미설치 경우 등 시설개선명령발령 후 미이행시

⇒허가규모는 6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(오분법 제55조8호), 신고 규모는 200만원이하 벌금 (오분법 제56조6호)

■허가규모농가에 설치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「관리일지」가 3년간 미보존된 경우

⇒100만원이하 과태료

■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나거나 파리·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·번식하는 경우

⇒100만원이하 과태료

■저장액비를 허가나 신고시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경우

⇒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

다. 경종농가에서 액비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사항

■우량액비 생산을 위하여 발효가 쉽게 되거나, 악취 저감에 적합한 분뇨공급 요망

•육성·비육돈 축분 위주로 공급요망하며, 항생제, 소독제의 사용을 가급적 금지한 우량 축분뇨 공급요망

■악취 저감 및 부숙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요망

•환경개선제의 효율적인 사용방법 교육 포함

■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시범포 설치, 연사회, 평가회 개최요망

•액비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농촌진흥청, 도농업기술원, 시·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기관의 지도를 희망하고 있음

5. 향후 액비저장조 설치 및 액비화사업 추진 계획

■가축분뇨가 농사에 좋은 것은 모두 알고 있다고 보지만 저장 및 살포시 발생하는 악취와 과량시비로 인한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고 있으므로, 경종농가 입장에서 분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보급 및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겠음

•가축분뇨액비 사용기준, 살포시기, 살포농도, 살포시 유의사항 등 액비사용 기술과 작물별 액비의 사용 예를 담은 기술지도지침(가축분뇨액비 사용기술, 2001)을 발간하여 현장에서 농가지도에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보급할

계획임

■경종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확대지원('03 : 680개소)하여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을 추진하겠음

■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시켜 액비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'03년도에 「축분비료유통센터」 40개소를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수거, 운반, 살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임

•「축분비료유통센터」는 시·군농업기술센터, 지역농·축협, 양돈협회 시·군지부 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액비에 대한 품질관리, 토양분석, 시비량 결정, 토양관리 프로그램 지도 등을 담당

■현재 유통되고 있는 환경개선제를 평가·홍보할 계획이며, 축산농가에서 평가결과 우수한 환경개선제를 활용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질 좋은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
■아울러 기 설치된 액비저장조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,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하여 액비저장조 활용성과를 높이도록 하며, 향후 축산분뇨자원화 사업 특히 액비화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**양돈**